

#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신동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305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신동원 의원(1명)  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규남,  
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  
김원태, 김재진, 김태수,  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민병주, 박춘선,  
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  
윤기섭, 이경숙, 이상욱,  
이성배, 이종배, 이종태,  
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  
홍국표 의원(28명)

### 1. 제안이유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직장, 학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시는 그간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서울 소재 직장 종사자 및 대학(원)생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해 왔음.
- 그러나 현행 조례상 ‘서울 소재 대학(원)생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장려사업을 수행하고, 참여실적 등에 따라 포인트와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, 해당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-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 되어 있는 ‘서울 소재 대학(원)생’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참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(안 제8조, 제9조제2항)

나. 그 밖의 문구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,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, 자영업자, 대학(원)생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참여실적, 횟수, 기여도 등”을 “참여실적, 횟수, 기여도 등(이하 “참여실적 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, 자영업자, 대학(원)생에게도 참여실적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신체활동장려사업”을 “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”으로, “전문가는”을 “전문가에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</u> 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</u>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<u>서울시</u>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	제5조(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수립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시</u> -----.
제8조(신체활동장려사업)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6조의3(신체활동장려사업)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 1. ~ 5. (생 략)	제8조(신체활동장려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, 자영업자, 대학(원)생을 사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.</u> 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9조(비용의 지원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제8조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·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사업 참여 기간의 <u>참여실적, 횟수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</u>	제9조(비용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참여실적, 횟수, 기여도 등을(이하 “참여실적 등”이라 한다)</u> -----

--. 이 경우 시 소재 직장인, 자영업자, 대학(원)생에게도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주소를 두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로 한다.

④ (생 략)

제11조(수당 등) 신체활동장려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③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 ----- 전문가에게 ----- -----.

##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추진사업1)의 근거를 마련 하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) 문의결과 향후 기편성예산 외 늘어나는 추가 재정소요(현재로서는 별다른 확대계획 없음)는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 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 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 
추계분석관 손제승  
☎ 02-2180-7953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\*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시민건강국 <서울형 헬스케어(손목닥터9988)> : 30,374,143천원